

# 2019년도 제28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자 : 2019. 12. 13.(금요일)
- 방 법 : 온라인심의
- 대 상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 심의위원 : 최승수(분과위원장), 박성호 위원, 박재화 위원, 박정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의결안건〉 ※ 안건 검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II. 회의안건 및 결과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회의안건: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10건(안건번호 제제2019-161792호~제2019-161891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그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함

### Ⅲ. 주요내용

- A 위원 : 안전번호 제2019-161792호~161891호(‘☆☆☆☆’ 사이트의 ‘(영화)조커(2019)’ 등 110건의 게시물)는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의견임. 금번 심의 안전인 복제물에 경우에는 모두 저작권자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저작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 등 권리자가 아닌 개별 이용자들이 온라인을 통하여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는 권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B 위원 : 안전번호 제2019-161792호~161891호(110건의 게시물)는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 본 심의에 상정된 100개 안전은 최근에 개봉된 110개의 영상 저작물의 불법 복제물의 전송에 대한 것이다. 대상 저작물은 인터넷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불법 전송되고 있음이 채증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안전의 게시물은 공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게시자에게 저작권 법에 의해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D 위원 : 이번에 불법 복제 전송이 문제된 심의안건들은 모두 2019년 공개된 국내외 영상콘텐츠에 관한 사안들로서, 예컨대 영화 두번할까요(2019), 영화 얼굴 없는 보스(2019), 영화 82년생 김지영(2019), 영화 조커(2019), 영화 분노의 질주: 홉스&쇼(2019), 영화 애드 아스트라(2019)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불법 복제 전송된 영상콘텐츠들은 모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검토보고서의 원안대로 모두 시정권고 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019년 제28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12. 13.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박성호

위원 박재화

위원 박정인